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

□ 제정 2009. 04. 22

□ 개정 2017. 05.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학칙 제37조의 2, 학칙시행세칙 제 9장 졸업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복수학위제협정을 체결한 국·내외대학(이하 “상대교“라 한다)간의 복수학위제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복수학위제라 함은 본교와 상대교(이하 “양교“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수업연한 및 신분) 1.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학하고 있는 학생(이하 “복수학위과정생“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양교에서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복수학위과정생은 수학기간 동안 양교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및 납입금) 1. 복수학위과정생은 양교의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기 소정의 등록을 하고 필요한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복수학위과정생의 납입금은 양교간의 협정에 의한다.

제2장 본교복수학위과정생

제5조(지원자격) 본교 학생으로서 복수학위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복수학위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교에서 2개 학기이상을 이수하고 학년 당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단 휴학 중인 자는 파견 학기에 복학예정인 자로 한다.

2.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6조(자격, 파견시기 및 인원) 1. 본교 복수학위과정생은 협정에 의하여 상대교에 파견된 자로 한다.

2. 본교 복수학위과정생의 파견시기 및 인원은 협정에 의한다.

제7조(소속) 본교 복수학위과정생의 상대교에서의 소속은 본교의 주전공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교과과정) 본교 복수학위과정생은 파견기간 중 상대교에서 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학점인정) 1. 본교 복수학위과정생이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 당 소속 학부(과)

(전공)의 연간 최대 이수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항의 학점은 본교 소속 학부(과)(전공)장의 심사를 거쳐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3. 양교의 협의에 의하여 본교 복수학위과정생이 상대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이수학점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지도) 본교 복수학위과정생의 소속 학부(과)(전공)장은 필요 시 현지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를 지정하고, 상대교의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현지에서의 생활, 수업 및 학사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중도포기) 본교 복수학위과정생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 복수학위과정 이수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수원대학교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규정을 준용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제12조(졸업사정) 1. 상대교의 총 졸업소요학점과 본교의 총 졸업소요학점이 차이가 나거나 상대교에서의 최소이수학점 이수로 인하여 본교 학생이 상대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본교 졸업소요학점에 부족한 경우에는 본교에서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본교 복수학위과정생이 본교에서 이수한 성적 등 상대교의 학칙과 관련 규정에 의한 졸업사정에 필요한 제반 자료는 상대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송부한다.

제3장 상대교복수학위과정생

제13조(자격, 파견시기 및 인원)

1. 상대교 복수학위과정생은 협정에 의하여 본교에 파견된 자로 한다.

2. 상대교 복수학위과정생의 파견시기 및 인원은 협정에 의한다.

제14조(소속) 상대교 복수학위과정생은 상대교의 학부(과)(전공)와 같다고 인정하는 본교의 학부(과)(전공)에 소속된다.

제15조(교과과정) 1. 상대교 복수학위과정생은 본교 파견 기간 중 본교에서 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되 해당 학부(과)(전공)의 주전공 이수 학점을 기준으로 이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대교에서 파견된 학생의 교과이수를 위하여 별도로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학점인정) 1. 상대교 복수학위과정생이 본교에서 취득 가능한 학점에 관하여는 학칙 제 37조의 2를 준용한다.

2. 양교의 협의에 의하여 상대교 복수학위과정생이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이수학점을 정할 수 있다.

3. 상대교 복수학위과정생이 상대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소속 학부(과)(전공)장의 심

사를 거쳐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학사관리 등) 1. 상대교 복수학위과정생의 지도교수, 생활, 수업 및 학사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관장한다.

제18조(중도포기) 상대교 복수학위과정생이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복수학위과정 이수포기원을 상대교로 제출하고 이를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상대교 복수학위과정생의 졸업사정은 마지막 학기에 최종 성적이 확정된 후에 하며, 본교 졸업일 1개월 전까지 상대교로 부터 최종성과 함께 졸업요건 충족여부가 통보되고 학칙시행세칙 제9장 졸업 제 54조에서 규정한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본교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4장 기타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교의 학칙 및 학사관련 제반 규정에 따르거나 상대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